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025
------	------

2022. 02. 2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10월 29일, 김태수 의원 외 9명

나. 회부일자 : 2022년 1월 25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2.02.14.)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태수 의원)

1. 제안이유

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사업을 확대하고, 항일 독립운동 유적 관련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 하며, 항일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보호조치를 구체화하고, 항일독립

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정책 공로자에게 표창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항일독립운동 유적 소유자의 관리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의3 신설)

다. 유적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의4 신설)

라.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시장이 항일운동 유적의 발굴·보존을 위하여 기념관 건립 사업을 지원하고, ‘항일독립운동 유적 자문단’을 구성해 역사적 가치 판정 등 관련한 자문을 받도록 하며, 항일독립운동유적 소유자의 관리책임, 유적보호 조치 등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음.

나. 항일독립운동 관련 사업 현황

- 서울시는 항일독립운동 유적 관련 사업으로 항일독립운동 관련 역사문화유적지 표석 설치사업과 항일독립운동 관련 주제로 서적 발간 및 기획전시 등을 통해 독립운동 역사현장과 사건을 소개하고 독립운동가 인물 등을 조명해오고 있음(참고자료1).
- “항일독립운동 관련 역사문화유적지 표석 설치사업”은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건물이 없고 터만 남아있는 경우나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경우 사료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석을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관련 표석은 63건임.
-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제정(2020. 7.) 이후 기존 표석 설치사업과 항일독립운동 관련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다. 항일독립운동 관련 사업의 확대(안 제5조 4호·5호 신설)

- 안 제5조는 국외연계를 통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안 제5조제4호)과 항일독립운동 유적 관련 기념사업 및 기념관 건립·지원을 신설(안 제5조제5호)하는 사항임.
- 현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2가지 조례가 운영되고 있음.

- 전자의 ‘항일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¹⁾에 따라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계승을 목적으로 기념사업이나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의 건립을 지방자치단체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항일독립운동 유적 관련 기념사업 및 기념관 건립 지원(안 제5조제5호 신설) 규정은 ‘항일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해 일원화시켜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라. 자문단 구성(안 제5조의2 신설)

- 안 제5조의2는 항일독립운동 유적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항일 독립운동 유적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고 있음.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국가보훈 기본법」 제26조(공훈선양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 하지만 제4조제3항 계획 수립 등 현행조례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개정안과 중복되고 있어 이를 삭제해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수정의견>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p>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일독립운동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2.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선정 기준 수립 3.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시책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삭제></p>
<p><신설></p>	<p>제5조의2(자문단 구성) 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항일독립운동 유적 자문단(이하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15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향토 사학자, 문화재위원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p> <p>③ 자문단은 아래의 사항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 수집·분석 2. 유적의 보존 및 역사적 가치 판정 	<p>제5조의2(자문단 구성) 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항일독립운동 유적 자문단(이하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15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향토 사학자, 문화재위원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p> <p>③ 자문단은 아래의 사항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2.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선정 기준 수립

	<p>3. 안내판 등 설치 및 항일유적 지도 제작 등</p> <p>4.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과 관련한 자문</p>	<p>3.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시책에 대한 평가</p> <p>4.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 수렴분석</p> <p>5. 유적의 보존 및 역사적 가치 자문</p> <p>6. 안내판 등 설치 및 항일유적 지도 제작 등</p> <p>7.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과 관련한 자문</p> <p>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④ 시장은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제4항의 자문단(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조사에 드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p>	<p>④ (개정안과 같음)</p> <p>⑤ (개정안과 같음)</p>

마. 유적 보호 및 관리(안 제5조의3, 안 제5조의4 신설)

- 안 제5조의3은 항일 독립운동 유적 소유자의 관리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시장의 보호조치를 규정한 사항임.
- 국가 및 시 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소유자 관리의 원칙으로 관리·보호 등 근거법령이 명확하나, 현재 항일독립운동 유적 중 사적 제32호 서울 독립문 등 국가지정문화재(18건)와 유형문화재 제1호 장충단비 등 서울시지정문화재(6건)는 많지 않은 실정임(참고자료 2).

- 본 조항은 유적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으로 상위 법령 근거가 필요한 바, 비 지정문화재가 대부분인 항일독립운동 유적에 관하여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게 유적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적 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자치구에 관리·보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수정의견>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신설>	제5조의3(관리의 원칙) ①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으로써 해당 유적을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u>소유자·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자치구에 관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u>	제5조의3(관리의 원칙)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u>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자치구에 관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u>

- 또, 안 제5조의4는 ‘항일독립운동 유적 자문단에서 보존 및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고증을 거친 항일독립운동 유적에 대하여 안내판 등 설치, 별도의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자문단에 보호조치 판단여부에 대한 강제권한을 부여하면 심의·의결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재위원회의 기능과 충돌될 가능성이 있어 강제규정보다는 임의 규정으로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수정의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신 설>	제5조의4(유적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역사적으로 고증을 거친 항일독립운동 유적에 대하여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문단에서 보존 및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항일독립운동 유적에 대하여 <u>별도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u>	제5조의4(유적 보호 및 관리)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자문단에서 보존 및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항일독립운동 유적에 대하여 <u>별도의 보호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u>

라. 종합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항일운동 유적의 발굴·보존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항일운동 자문단’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항일유적의 보존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다만, 항일독립운동 유적 관련 기념사업과 기념관 건립·지원은 공
훈선양 사업 및 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가
보훈 기본법」을 관계법령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항일독립
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해 개정안에서는 삭제할
필요성이 있음.

- 항일독립운동 유적 관련 소유자의 관리의무나 별도의 보호조치에
관해 규정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 없이 과도하게 유적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적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적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함.

- 항일독립운동 유적을 포함하여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적,
건축물 등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통해 지정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등록)안내판을 설치하여 보존·관리하고 있음.

- 따라서 항일독립운동 유적 자문단에 보존가치 유무를 판단하는
강제권한을 갖게 되면 문화재위원회의 기능과 충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임의규정으로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사업을 확대하고, 항일 독립운동 유적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중복되고 있어 이를 삭제하였으며, 유적 소유자에게 상위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한 관리책임 규정을 부여하고 있어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유적자문단에게 의무권한 기능은 기존 문화재위원회의 역할과 충돌될 소지가 있어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기 위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안 제4조제3항은 개정안과 중복되고 있어 이를 삭제함.
- 안 제5조제5호는 「항일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함.
- 안 제5조의2제3항 각 호에 유적의 보존 및 역사적 가치 자문, 항일유적 지도제작 등을 신설함.

- 안 제5조의3제2항은 유적에 관하여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과도하게 유적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유적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자치구에 관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5조의4제2항은 자문단이 문화재위원회의 기능과 충돌가능성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수정함.

V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11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025
----------	---------

제안년월일 : 2022년 2월 14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사업을 확대하고, 항일 독립운동 유적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중복되고 있어 이를 삭제하였으며, 유적 소유자에게 상위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한 관리책임 규정을 부여하고 있어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유적자문단에게 의무권한 기능은 기존 문화재위원회의 역할과 충돌될 소지가 있어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기 위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안 제4조제3항은 개정안과 중복되고 있어 이를 삭제함.
- 안 제5조제5호는 「항일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함.
- 안 제5조의2제3항 각 호에 유적의 보존 및 역사적 가치 자문, 항

일유적 지도제작 등을 신설함.

- 안 제5조의3제2항은 유적에 관하여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과도하게 유적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유적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자치구에 관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5조의4제2항은 자문단이 문화재위원회의 기능과 충돌가능성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수정함.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5조제5호를 삭제한다.

안 제5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자문단은 아래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2.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선정기준 수립
3.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시책에 대한 평가
4.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 수립·분석
5. 유적의 보존 및 역사적 가치 자문
6. 안내판 등 설치 및 항일유적 지도 제작 등
7.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과 관련한 자문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 제5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자치구에 관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안 제5조의4제2항 중 “마련하여야 한다.” 를 “마련할 수 있다.” 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계획의 수립 등)</p> <p>① ~ ② (생 략)</p> <p>③ <u>시장은 다음 각 호</u> <u>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u> <u>한 경우에는 항일독립</u> <u>운동 관련 분야 전문가</u> <u>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u></p> <p>1. <u>제1항에 따른 계획</u> <u>의 수립</u></p> <p>2. <u>항일독립운동 유적</u> <u>의 선정기준 수립</u></p> <p>3. <u>항일독립운동 유적</u> <u>발굴 및 보존 시책에</u> <u>대한 평가</u></p> <p>4. <u>그 밖에 시장이 필요</u> <u>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p>	<p>제4조(계획의 수립 등)</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계획의 수립 등)</p> <p>① ~ ② (개정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u><삭 제></u></p>
<p>제5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3. (생 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5조(사업의 추진)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국외연계를 통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u></p>	<p>제5조(사업의 추진) (현행과 같음)</p> <p>1 ~ 3. (개정안과 같음)</p> <p>4. (개정안과 같음)</p>

<p><신 설></p>	<p>5. 항일독립운동 유적 관련 기념사업 및 기념관 건립·지원</p>	<p><삭 제></p>
<p><신 설></p>	<p>제5조의2(자문단 구성 ① ~ ② (생략) ③ 자문단은 아래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 수집·분석 2. 유적의 보존 및 역사적 가치 판정 3. 안내판 등 설치 및 항일유적 지도 제작 등 4.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과 관련한 자문 ④ ~ ⑤ (생략)</p>	<p>제5조의2(자문단 구성)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자문단은 아래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2.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선정기준 수립 3.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시책에 대한 평가 4.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 수집·분석 5. 유적의 보존 및 역사적 가치 자문 6. 안내판 등 설치 및 항일유적 지도 제작 등 7.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과 관련한 자문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 ⑤ (개정안과 같음)</p>

	<p>제5조의3(관리의 원칙)</p> <p>① (생략)</p> <p>② 시장은 <u>소유자·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자치구에 관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u></p>	<p>제5조의3(관리의 원칙)</p> <p>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시장은 <u>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자치구에 관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u></p>
	<p>제5조의4(유적 보호 및 관리)</p> <p>① (생략)</p> <p>② 시장은 자문단에서 보존 및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u>항일독립운동 유적에 대하여 별도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u></p>	<p>제5조의4(유적 보호 및 관리)</p> <p>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시장은 자문단에서 보존 및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u>항일독립운동유적에 대하여 별도의 보호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u></p>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4호를 같은 조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외연계를 통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5조의2(자문단 구성) 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항일독립운동 유적 자문단(이하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5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향토 사학자, 문화재위원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자문단은 아래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2.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선정기준 수립
3.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시책에 대한 평가
4.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 수립·분석
5. 유적의 보존 및 역사적 가치 자문
6. 안내판 등 설치 및 항일유적 지도 제작 등
7.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과 관련한 자문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의 자문단(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조사에 드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5조의3(관리의 원칙) ①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으로써 해당 유적을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자치구에 관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4(유적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역사적으로 고증을 거친 항일독립운동 유적에 대하여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문단에서 보존 및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항일독립운동유적에 대하여 별도의 보호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표창)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상당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 ② (생략)</p> <p><u>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일독립운동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u> <u>2.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선정기준 수립</u> <u>3.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시책에 대한 평가</u> <u>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p>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u><삭 제></u></p>
<p>제5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생략)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생략)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5조(사업의 추진)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현행과 같음) <u>4. 국외연계를 통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u> 5. (현행 제4호와 같음) <p><u>제5조의2(자문단 구성) 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항일독립운동 유적 자문단(이하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u></p>

② 시장은 15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향토 사학자, 문화재위원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자문단은 아래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2.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선정기준 수립

3.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시책에 대한 평가

4.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 수립·분석

5. 유적의 보존 및 역사적 가치 자문

6. 안내판 등 설치 및 항일유적 지도 제작 등

7.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과 관련한 자문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

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의 자문단(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조사에 드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3(관리의 원칙) ①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으로써 해당 유적을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자치구에 관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4(유적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역사적으로 고증을 거친 항일독립운동 유적에 대하여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문단에서 보존 및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항일독립운동유적에 대하

여 별도의 보호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2(표창)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상당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